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하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하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하기

목 차

I. 제정배경 1

II. 주요내용 5

- 1. 적용대상 7
- 2. 부정청탁 금지 8
- 3. 금품등 수수금지 13
-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18
- 5. 징계 및 벌칙 19

III. 적용사례 21

- 1. 부정청탁 금지사례 23
- 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사례 33

참고자료 (관련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9

I

제정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하기

I 제정배경

□ 헌법적 가치의 실현

-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출
- 청탁금지법도 부패방지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배경하에 추진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 '15년도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의 경우 59.2%에 달함
-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지 아니하고는 국민들의 신뢰 제고는 물론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한계

□ 국제사회의 대외 신인도 향상

-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 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
※ '15년 국제투명성기구(P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 168개국 중 37위,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전문가가 우리 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

II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하기

II 주요내용

I → 적용대상

□ 대상기관 : 공공기관 (제2조 제1호)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2호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대상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4개)
①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②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③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제3조), ④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등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 유형(4개)
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②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③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④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 국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

2 →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금지의 내용 (제55조, 제6조 및 제21조)

구성요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형	
본인을 위한 부정청탁	본인이 직접 부정청탁	제재 없음, 공무원인 경우 징계책임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일반인의 부정청탁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청탁 주체** : 자연인만 해당하고 법인은 제외. 법인 임직원의 청탁은 제3자를 위한 청탁으로 법인은 양벌규정(제24조)에 따라 제재

* 법인 임직원의 범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 **부정청탁 요건** :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청탁
 - 법령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포함
 - 정상적인 거래관행 :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로서 행위의 의도 · 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정청탁 방법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 직접청탁 : 제재가 없으나 공무원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 징계책임
- 제3자를 통한 청탁 : 부모의 자녀를 위한 청탁, 법인 임직원의 법인을 위한 청탁 등이 대표적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 상대방** :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등

-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 국장 포함
-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 ·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위임자) 등 포함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 · 직책에 있는 자 제외
※ 배우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의 제3자는 될 수 있으나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될 수 없음

□ **부정청탁 유형** (제5조 제1항)

- ①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등 법령(조례 ·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 조세 · 부담금 · 과태료 · 과징금 · 이행 강제금 · 범칙금 ·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③ 채용 · 승진 ·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④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 · 의결 ·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 포상 ·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⑥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⑦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⑧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⑪ 병역판정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⑬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뚫고 통과하게 하는 행위
- ⑭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⑮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 예외사유 (제5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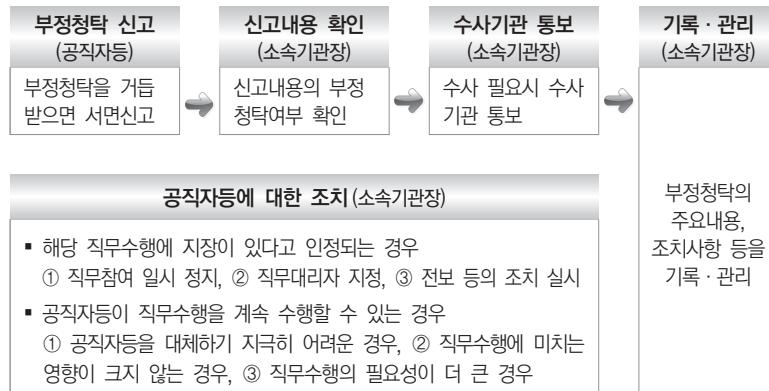
- ①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③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④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⑥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⑦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회상규의 판단요건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등).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7조)



○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 및 신고의무

- 거절의무 : 부정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의무 ⇒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계책임
- 신고의무 : 거절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
〈동일한 부정청탁 예시〉 동일한 내용을 ① 직접 1회, 제3자를 통해 1회 청탁, ② 2회 모두 제3자를 통한 청탁, ③ 법인 소속 임직원 2명 이상이 각각 청탁

○ 부정청탁 신고에 대한 조치

-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 : 신고내용 확인 및 수사기관에 통보(수사 대상자), 관할법원통보(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 기록관리 및 공개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②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 계속 처리

3 → 금품등 수수금지

□ 수수금지 내용 (제8조, 제22조)

구성요건			제재 수준
수수자	수수금액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	
공무원등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직무관련성 ×, 대가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 ○, 대가성 ×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배우자	금액제한 없음		제재대상은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금품등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

-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금품등 수수 당사자

- 공직자등 :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배우자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제공자 : 누구든지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하는 것 금지

○ 동일인 1회, 매 회계연도

- 동일인 여부 :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1회의 판단 : 자연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 의미임. 따라서 수개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1개 행위로 평가될 경우 1개 행위임
- 매 회계연도 기준 :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
 〈예시〉 ○○시 발주공사에서 담당공무원 A가 수주기관 D의 소속 입찰직원 B로부터 60만원, 현장소장 C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경우. A의 수수행위가 동일인(D)로부터 1회 수수한 행위로 평가되면 형사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 B,C로부터 각각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과태료 책임(2~5배)

○ **직무관련성** :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

 '직무 관련성'의 범위

◆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

- ① 법령상의 직무 : 법령상 일반적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이면 충분하고 현실적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필요는 없음
- ② 사실상·관례상의 직무 :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 사실상 처리하는 사무(자기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한 경우, 동료로부터 임명적으로 사실상의 권한위임을 받은 경우 등)
- ③ 최종적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하위직 공직자의 직무

◆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 ①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더라도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에 따른 세력을 기초로 직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②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소관 사무에 관해 사실상 의견이 존중되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다만, 직무관한자의 행위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음

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행동강령 제14조) 직무관련자 유형으로 8가지 열거

-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②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③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④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查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⑤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⑦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⑧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수수금지의 예외사유 (제8조 제3항)

- 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②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 (權原)¹⁾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⑥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⑧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²⁾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1) 정당한 권원 존재여부 :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가장매매의 경우는 정당한 권원이 없음. 공무원 A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 B로부터 부동산을 소개 받는 자리에서 사업자 B로 부터 1억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일주일 후 1억원을 갚은 경우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금융이익을 취득(서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고위공무원 A가 사업자 B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1천만원의 매매로 가장한 경우 등)

2)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예시>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받는 경우,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의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overbooking)을 했는데, 이코노미석 만석으로 우연히 공직자등의 좌석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관호상제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사회상규에 해당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선물과 뇌물의 구별		
허용되는 음식물·선물 및 경조사비	허용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 음식물 및 선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허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허용.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대가성 있는 수수는 기액에 관계없이 처벌 뇌물성의 인정여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위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기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기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사교적 의례로서 선물과 뇌물 구별	구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선물은 사교의례의 명목으로 주고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뇌물성이 인정³⁾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관습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선물은 뇌물성 부정
	뇌물 인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온 부군수가 군청 발주공사의 도급업자로부터 선처하여 달리는 청탁을 받고서 자녀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262 판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하여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사례(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뇌물 부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직원이 오랜 친구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친구와 어릴 때부터의 관계, 만날 때의 복장, 피고인의 담당업무, 식사비용 등을 종합 하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향응이라고 볼이 상당(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7 판결).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31,500원의 식사를 제공 받은 사안에서, 제공자와의 관계, 특히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식사비용을 번갈아 가면서 부담한 점, 식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사교적 의례에 해당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2 판결)

3) 공무원이 받은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 수수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 신고의무 :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 신고
- 반환의무 : 자신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배우자가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
⇒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는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등 감면사유

○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 수수 금지 금품등 : 반환 또는 인도 요구
- 공직자등 :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 위법한 직무처리 : 직무 중지·취소 등 필요조치 가능

□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제한 (제10조)

○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시행령 제9조 별표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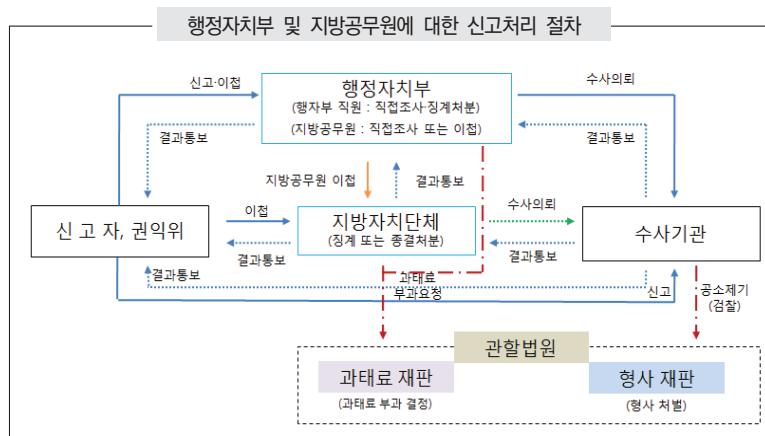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상한액은 강의 1시간, 기고 1건 기준으로 1시간 초과시 초과분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함

○ 외부강의의 신고 및 반환

- 외부강의 신고 : 사전신고 원칙이나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강의 후 2일 이내 (위반시 징계책임)
-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제13·14조)

- 행정자치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지방공무원에 대해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고 가능
- 신고내용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해 자체종결 또는 징계처분하거나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필요시 지자체 이첩),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15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중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5 → 징계 및 별책

□ 징계 (제21조)

-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재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가능(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두4184 판결)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등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 징계대상
- 금품등을 수수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 제재 및 징계대상에서 제외

□ 과태료 부과 및 부과취소 (제23조)

-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결정)의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
 -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가능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하나 청탁금지법에서는
 - 과태료 부과 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나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 벌칙 (제22조)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본인을 위한 부정청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공직자가 직접 부정청탁한 경우 징계책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의 부정청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강의시 기준초과 사례금을 수수하고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천만원 이하 과태료

III

적용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하기

III 적용사례

I → 부정청탁 금지사례

청탁횟수 및 신고의무

사례 1 이해관계자 본인이 직접 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A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다만 A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책임

사례 2 직접청탁 + 제3자를 통한 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직접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C는 A의 청탁에 대해서는 거절의무, B의 청탁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 발생, B는 공무원으로서 제3자(A)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3 ▶ 제3자를 통한 청탁 2회

○○건설회사(주)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하자 거절하였고, 그 다음 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 공무원 C에게 한 경우, ○○건설회사(주)는 제3자를 통한 2회 청탁을 한 것으로 C는 거절의무, 신고의무 부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례

사례 4 ▶ 공익적 목적 위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에 해당

사례 5 ▶ 위법·부당 처리의 청탁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물의 감정평가결과 가액을 낮추어 평가하여 달라는 청탁(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25 판결)

사례 6 ▶ 처분감경의 청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B는 ○○부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의사 A 몰래 부탁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

사례 7 위반행위 적발 후 묵인청탁

○○ 파출소 순경 B는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A에 대해 호흡기 측정을 하자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8%로 측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 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했고 B가 이를 묵인한 경우, A는 제재 제외 B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8 특혜의 부탁 (1)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사례 9 특혜의 부탁 (2)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 (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에게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조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사업자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A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B는 공직자이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C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10 ■ 특혜의 부탁 (3)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A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이 물품납품 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봐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665 판결)

사례 11 ■ 일반음식점 인허가 청탁

100m²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가 담당 공무원 C에게 5m³/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하여 신고·수리해 준 경우, 민원인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B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C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12 ■ 직무상 비밀누설의 청탁의 거절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의 친구인 변리사 B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B가 사무관 C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사무관 C가 이를 거절한 경우, A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B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C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사례 13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청탁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정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정순위의 변경을 지시하며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C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사례 14 자녀의 신규채용을 위한 청탁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가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B는 공직자로서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C는 부정청탁을 수행하였으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15 자녀의 병역혜택을 위한 신체등위 판정 부정청탁

입영대상자 A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음. 이에 아버지 B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한 경우 A는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나,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D는 공직자로서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16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청탁 – 병원의 접수순서 부정청탁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A는 본인을 위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B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C는 부정청탁을 수행하였으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

사례 17 친구 어머니의 우선 병원진료 청탁

공무원 B는 “어머니가 위독하다. 국립병원 C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안면이 있는 이 병원 의사 D에게 전달했으나, 해당 의사은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지만 사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B의 친구의 어머

나는 병원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입원치료를 받게 된 사례에서 B는 공무원의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B의 친구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D는 실제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제되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처분 대상

사례 18 ▶ 어머니의 장기요양 인정을 위한 청탁

B의 어머니 A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아들 B는 어머니 A가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장기요양인정 담당 공무원 C에게 자신의 어머니 A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머니 A 모르게 청탁한 경우, 아들 B는 어머니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사례 19 정당한 업무상의 부탁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예금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그를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님(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 708 판결)

사례 20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A가 오물처리업체인 B주식회사와 사 이에 월수거수수료 750,000원으로 한 쓰레기수거계약을 체결한 후 B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C주식회사로부터 월수거수수료 600,000 원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 없는 B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쓰레기수거계약 해제의 통고를 하였으며 이에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로부터 “금 3,000,000원을 줄터니 위 계약을 유지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청탁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사례 21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부탁

택시에 블랙박스(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에게 부탁함

사례 22 단순한 선처 · 편의의 부탁

○○직물공업사 직원 A와 B가 은행원에게 ○○직물공업사에게 수출지원 금융을 실시함에 있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 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사례 23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음. 그 후 민원인 A가 건축 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케팅 시위를 한 경우, A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법적용관련 사례

사례 24 ▶ 퇴직 후 취업관련 부정청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한 A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방송에 취업하고자 하였음. A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인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방송 인사담당 국장 C에게 취업을 청탁한 경우 A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B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례 25 ▶ 회사를 위한 임직원의 청탁

○○건설회사(주)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직원 A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주)는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2 →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사례

제공자 및 금액계산

사례 1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도 텐키심사위원으로 건축사 A가 ○○건설회사 임원 B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양주, 직원 C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D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은 경우 A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되고 ○○건설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임직원 B, C, D는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건설회사는 양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2 공무원이 관련협회 직원들로부터 축의금 수수

중앙부처 사무관A의 결혼식에 해당 부처와 관련된 협회 직원 11명이 공동 명의로 축의금 110만원을 내고 피로연에서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경우, A사무관이 받은 축의금의 출처에 따라 협회 직원들이 각 10만원씩 돈을 모아 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 축의금 출처가 협회의 예산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

사례 3 공무원이 2회 이상 금품등 수수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 대표 C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한 경우 과장 A와 사무소장 B는 각각 12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계산

사례 4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한 경우

A기업 대표가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서 부의금도 별도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화환과 부의금을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직무관련성

사례 5 전별금으로 명품 가방 수수

경기도 소재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하던 공무원 A가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자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동안 고맙다는 표시로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한 경우 A와 B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6 요식업자로부터 수차례의 금품등 수수

○○구청 위생과 공무원 A는 ○○구청 관할지역에서 요식업을 하는 B로부터 작년 9월 초 2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9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았고, 10월 초 1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10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은 경우, A와 B는 직무관련자로서 65만원을 수수하여 모두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례 7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받은 접대

공기업 영업본부 직원인 A는 영업본부장 B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가서 B와 함께 있던 계약업체 직원 C와 식사를 함께 하였음. 영업본부 직원 A는 계약업체 직원 C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식사 후 계약업체 직원 C가 60만원을 계산했지만 영업본부 직원 A는 영업본부장 B가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안 경우, A는 접대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B와 C는 직무와 관련하여 40만원(B가 초대한 A의 식사비 포함)을 수수하였으므로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례 8 수수한 금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사용

○○동의 동사무소 발주 사업자 A는 2016년 연말을 맞이하여 동장인 B에게 좋은 일에 사용하라며 동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50만원을 주었는데, 동장B가 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우이웃 성금으로 낸 경우 A, B는 직무관련자로써 각각 2~5배의 과태료

사례 9 수수한 금품가액 만큼 접대한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A가 사회복지사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았는데, 일주일 후 공무원 A가 사회복지사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경우, ‘지체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A, B 모두 2~5 배의 과태료 부과대상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례 10 배우자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 구입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원 업무 등을 하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의 배우자 B는 고위공무원 A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영화 제작자 C로부터 경매가 1억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1천만원에 구입하였는데, 고위공무원 A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매행위(가장 행위)는 무효이고 은닉행위(증여)는 유효, 따라서 수수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A는 형사처벌 대상, B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사례 11 배우자의 명절계기 금품수수

○○군 2016년도 하반기 인사에서 건설과 직원 C가 승진하자 상관인 건설과장 A의 배우자 B에게 추석명절을 계기로 3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보낸 경우 A는 B의 금품수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재대상이 아니나 금품수수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5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B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C는 제공한 금액의 2~5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

사례 12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후원금 수수

지방자치단체장(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는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해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A가 후원금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나,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제외 사례, 외부강의

사례 13 ▶ 고향 친구로부터 금품등을 받아 직원 격려비로 사용한 경우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인 A는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주라고 하면서 5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 A는 B와 직무 관련이 없어 제재 제외

사례 14 ▶ 외부강의 등의 해당여부 및 수수한도

E주무관은 소속 부처 산하 시험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위원으로서 콘도에서 1박 2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평가업무를 수행했다. 시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1일 30만원씩 총 60만원과 숙박비, 교통비(실비)를 지급한 경우 A의 평가업무의 형태가 평가를 위한 위원들 간 토론, 회의 형태였다면 공직자 외부강의료 사례금 기준이 적용되어 하루 최대 5급 이하 30만원만 받아야 하나 평가 자체만 하고 오는 것이었다면 외부강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는 상태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관련법률)

MINISTRY OF THE INTERIOR

관련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 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
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 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 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 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 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 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 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 ·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 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 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327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